

공공건설공사의 분쟁해결조항 개선방안 연구

Proposal of Improvement Devices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Public Works

이 지 연*○ 신 규 철** 이 재 섭***
Lee, Ji-Yeon Shin, Kyoo-Chul Lee, Jae-Seob

요 약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 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건설분쟁해결제도, 소송외 분쟁해결방법, 건설중재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 분쟁은 다수의 당사자 관여, 계약 이행기간의 장기성, 계약 외적 변수의 다수, 발주자 우위의 계약관행 등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건설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재판은 소송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한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선호되지 않고 있다. 구미 등 선진국에서는 재판의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발전시켜 왔으며 건설 분쟁에서는 ADR에 의한 해결을 제도화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분쟁에 대한 ADR제도로서 중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건설중재사건의 대부분이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그러나 이 조항은 선택적 중재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중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재합의 존부에 대한 상대방의 불안정 항변, 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어 분쟁 해결의 지연과 이중 지출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하여 유무효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중재 회피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개정될

으로써 건설 중재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중재 기피는 ADR의 도입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건설산업계의 바람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발주자 우위의 구태에서 벗어나 건설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하여 ADR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 공공공사 계약조건의 분쟁해결조항을 건설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건설분쟁 해결을 위하여 공공공사 계약조건 내 분쟁해결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분쟁에 있어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건설공사에서 계약조건 중 분쟁해결조항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건설분쟁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하여 건설중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이유를 건설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밝히고, 둘째, 공공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셋째,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국내외 판례 및 이론을 검토하여 선택적 중재합의의 의의를 명확히 하며,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건설분쟁 해결을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2. 건설분쟁해결제도의 고찰

* 학생회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일반회원, 현대건설 기획실장, 공학박사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1)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4년 건설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

2.1 건설분쟁의 특성 및 현황

건설공사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하여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고액으로 장기간 시행되며 계약 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많이 수반되는 특성을 지닌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원인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당사자간 의무불이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으로 시공사의 권리주장 및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시공사는 발주자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연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건설클레임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클레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주자나 시공사 사이에서 꺼려져 왔다. 최근 시공사의 인식변화로 클레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발주처의 인식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에 적합한 분쟁해결방법이 미흡하여 분쟁발생 시 시공사의 권리 구제 및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있다.

2.2 건설분쟁해결제도의 고찰

국내 건설분쟁해결제도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²⁾,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³⁾의 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⁴⁾의 알선·조정 및 중재가 있으며 대략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건설분쟁 해결제도

	협 의	알 선	조 정	중 재	소 송
특 징	- 당사자간의 협의와 양보	- 전문가 참여, 분쟁해결절차의 자율성 높음 - 우호적 해결 가능성 큼 - 신용 및 영업상 비밀 보장 - 신속성과 경제성	- 알선자 (1인) - 조정자 (3인) -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수락 권유 - 공정성과 중립성 필요 -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에 적합	- 소송과 배치 - 법적 효력 - 중재인의 관정 - 조정제도 활용 가능 - 전문성 확보 - 조정과의 연계 가능	- 강제성 - 공정성, 신뢰성 (제척, 기피, 회피 제도) - 3심제 - 공개심리 주의
		- 당사자간 객관적인 사실 파악, 이성적인 건제시 전제	- 법률적 구속력 없음	- 결정권한 없음. - 당사자 일방의해인 제언 중지 가능	- 단심제 - 중재합의 전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분쟁해결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입찰의

이의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를 이용할 경우, 사전 중재합의를 필요로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건설분쟁해결제도로서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가 발달되어왔으며, 건설분쟁의 경우 중재에 의한 최종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재 외에 중립적평가(Neutral Evaluation), 재판부속형중재(Count-Annexed Arbitration), 간이심리(Mini Trial), 간이배심심리(Summary Jury Trial)등의 조정제도가 있으며 최근에는 분쟁심사회(DRB : Dispute Review Board)와 파트너링(partnering)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AIA와 AGC의 분쟁해결절차를 살펴보면 일정기일 내에 단계적으로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⁵⁾.

국제엔지니어링건설당연맹(FDIC)에서 제정한 계약조건에서는 최종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 신판에서는 클레임 제기 절차 및 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클레임에 관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⁶⁾.

일본은 건설공사분쟁심사회가 있어 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분쟁을 알선·조정·중재함으로써 전문가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3. 기존 연구의 고찰

두성규(2001)는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서 중재 판정 이유를 중심으로하여 구체적 사례분석과 관련법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절차와 중재절차의 연계와 중재기구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이복남·이종수(2002)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평등한 계약문화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이 요구되며 특히 발주방식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정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이종수(2002)는 “국내외 분쟁해결조항의 비교·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성규(2003)는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서 설문조사와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처리과정에서의 건설업체의 이용실태 및 애로점 등을 살펴보고 계약단계별 중재판정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성일·이형찬·김재영(2003)은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9조 제1항
3) 국가계약법 제29조
4) 중재법 부칙

5) 이종수, 국내외 분쟁해결조항의 비교·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6)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분석과 개선방안”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클레임 발생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공공사의 클레임의 실태 및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클레임 예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고에서는 현행 분쟁해결제도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과 선택적 중재합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조항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3. 공공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의 문제점 분석

3.1. 현 제도내에서 건설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

건설 분쟁은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이 요구된다.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건설분쟁의 해결방법으로 ADR을 활용하고 있다. ADR은 분쟁을 자율적이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하여 경제적이며, 당사자의 신용 및 영업상 비밀보호가 보장되고,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있는 ADR제도는 알선·조정·중재제도가 있다.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선은 간단한 사건에 적합하며, 조정은 당사자 일방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며 각 조정위원회 조정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건설분쟁해결수단으로서 기피되고 있다⁷⁾. 그러므로 현 제도하에서 건설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

공공공사 도급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문서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⁸⁾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1조⁹⁾는 분쟁해결조항을 담고 있으나 단순히 분쟁해결방법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적기에 클레임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증빙자료의 확보와 사안의 사실여부 판단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지연되며 분쟁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와 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중재나 소송같은 강압적인 수단은 최종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분쟁해결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고 시간적·금전적으로 경제적인 조정 등을 사전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반면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중재와 소송을 동시에 규정한 이른바 선택적 분쟁해결 방법을 취하고 있어 중재합의 여부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중재사건의 90% 이상이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 것¹⁰⁾과 발주처의 중재기피 경향을 볼 때, 최근 정부의 개정안은 건설중재는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변천

유형	선택적 분쟁해결 조항
제1형 1998. 8.10. 개정	(1)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2형 1999. 9.9. 개정	②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3형 2001. 2.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의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가물당사자모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된 절차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제4형 2003. 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물당사자모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3.3 선택적 중재조항의 문제점

중재는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제3자(중재인)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양당사자간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중재합의를 선택적으로 규정하였을 경우 일방과 상대방의 선택이 다를 경우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확하지 않은 선택적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합의 여부에 대한 유·무효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중재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한 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의 본래 취지 및 장점을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해

10) 채완병, 상계서

7) 두성규, 현행 건설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8) 2003.12.26 개정

9) 2004.4.6. 개정.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내용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정과 맞추어 동일한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이종의 노력과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다.

3.4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판례

① 유효론의 입장을 지지한 판례

대구고등법원 2001.7.26. 선고 2000나7658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2. 선고 2002나687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2. 5. 선고 2001가합54637 판결 등이 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선택적 중재조항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분쟁 당사자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이익이 되고 편리한 면이 있으며, 1차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려는 당사자 자치 내지 자율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방이 중재를 선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일방당사자에게 이러한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재합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외국 판례는 홍콩법원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미국 연방법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¹¹⁾,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대하여 명백히 범위를 축소하지 않은 한 법원은 당사자의 의도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²⁾.

② 무효론의 입장을 지지한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0. 9. 19. 선고 2000가합37949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2. 21. 선고 2001가합6334 판결 등이 있다. 이의 근거는 중재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원에 의한 재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야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과 중재를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예로는 영미법과 대륙법의 주류적 견해가 있다¹³⁾.

③ 최근의 대법원 판례

2003년 8월, 대법원은 상대방의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할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의 하급심들에 영향을 주고 있어 최근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분쟁 사건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4.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

4.1. 개선 방향 및 개정안

11) 임채홍,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중재관련조항은 유효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논총(2001~2002), 2003

12) Moses Cone 추정의 법칙(Moses Cone Presumption) 비슷한 이론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가 있다.

13) 박경직, “선택적 중재합의론 小考”, 법륜신문 2002.8.29. 字

건설분쟁 해결에 있어서 절차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협의절차를 돕으로써 적기에 효과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인 건설분쟁해결제도의 흐름과 효과적인 건설분쟁 해결을 위해 ADR 및 중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우호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강제적인 것을 최종적인 해결방법으로 삼는다.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하여 중재합의 존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중재로의 해결 가능성을 넓힌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개정안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조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그 선택에 구속된다.

4.2. 기대효과 및 한계

제시한 개정안은 분쟁 발생시 당사자 자치의 우호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클레임 발생시 협의절차를 두도록 하여 클레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 결렬시 중재나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두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게 함으로써 분쟁해결기간에 유연성을 두었다.

부득이하게 조정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판보다는 건설분쟁 특성에 적절한 중재에 의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과 경제력 소모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의 정비와 조정효력에 대한 강제성이 요구된다. 또한 악의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연시킬 경우와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구속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선택권을 먼저 행사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협의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클레임을 꺼려왔으며, 이러한 클레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클레임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기에 클레임이 제기되지 못

함으로 인하여 건설 분쟁 발생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였을 경우에도 건설분쟁을 효과적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는 알선·조정·중재의 ADR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미흡과 연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조정만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있어서 분쟁해결조항은 중재를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에 대한 논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저해하고 있다.

선택적 중재합의는 세계적으로 중재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취지와 그 효용성을 고려하여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되어야 하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언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호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클레임의 효과적인 처리와 분쟁 발생시 우호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며 신속하게 해결을 모색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광경직, “선택적 중재합의론 小考”, 법률신문 2002.8.29. 字
2. 김성일 외,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3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논총(2001~2002), 대한상사중재원, 2003
4. 두성규, 현행 건설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5. 두성규,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6. 두성규,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7. 이복남·이종수,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8. 이종수, 국내외 분쟁해결조항의 비교·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9. 이종수, New FIDIC 제정의 이해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0. 한국중재학회, 2004년도 건설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 발표논문집, 한국중재학회, 2004
11. 현학봉, 건설공사 Claim, 탐구문화사, 2003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et of improvement devices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public improvement project in Korea. To do so, the study addresses the system and procedure of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reviews precedent cases, specifically focused of a selective arbitration case.

In public sector's initiated contracts, the absence of claim procedure clause is unable to response to the claims in timely manner, and the ambiguity of clause of selective arbitration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a dispute by arbitration. Thus, in this stud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explored as a way to resolve various construction disputes of public-initiated project in developed countries.

Keywords : Dispute Resolution System, ADR, arbitration
